

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김 수 성*

|| 목 차 ||

I. 서 론	111	IV. 해외(국내) 거주 연금 수령 시 이중과세 방지 방안	141
II. 선행연구의 고찰 및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의 이해	115	1. 특수직역연금 간의 과세 예규 해석 상이에 따른 문제점 극복	
1. 선행연구의 고찰		2. 해외 거주 사학연금 수령 시 비과세 효과 분석	
2.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의 이해		3. 캐나다 과세사례를 통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III. 해외(국내) 거주자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점	123	V. 결 론	150
1. 해외거주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 현황			
2. 해외 거주자 공적연금 수령 시 법 해석 및 문제점 분석			
3. 국내 거주자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 투고일 : 2022. 6. 29. 1차수정일 : 2022. 7. 27. 게재확정일 : 2022. 11. 14.

<국문초록>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게 해외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글로벌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더욱 국제적 인력의 이동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이동 인력에 대한 과세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하면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을 해외 국가에서 수령하게 되면 국내 연금소득과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특수직역연금 중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캐나다 거주 연금 수령 사례를 들어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에 관한 개선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선 사례를 통해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으로 해외 연금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령하는 경우 현행 세법 체계상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적 이동 인력에 따른 합리적인 연금소득 과세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뿐만 아니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큰 편익(benefit)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주제어** : 해외연금 수령, 전 세계 소득, 사회보장협약, 조세조약, 캐나다 연금 수령

I. 서 론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사람들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져 가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교통수단의 발달뿐만 아니라 거주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국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연금세제도 이제는 한 국가 안에서의 연금세제 측면에 국한되어 살펴보기 보다는 새로운 국제이동 인력의 국제적인 조세측면을 고려하여 연금세제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과거 연금세제가 한 국가 내에서만의 연금세제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글로벌화의 시대로 인하여 한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인 연금세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제이동 인력이 잦아짐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측면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거주지 국가 과세원칙과 원천지국가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중과세 위험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국제조세 측면의 연금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과세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한나라의 영토를 벗어나는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조세 효율성 및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이동과 관련한 양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 내용의 면밀한 검토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¹⁾ 이를 통해 어느 한 부류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조세상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사

1)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을 조세협약 또는 조세협정 등의 용어로,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협약의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전에 방지하고 조세의 합리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학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학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로 보아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의 과세대상소득(world-wide income)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예규 변경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행정규칙의 일종인 예규 변경 사례는 국제적 연금소득과세의 이중과세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이하 'BC주'라 함) 한인공인회계사 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국세청의 예규 변경을 통해 캐나다 거주 사학연금 지급자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하고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련 예규는 2018년 9월 4일에 변경되었으며,²⁾ 그 결과 2018년부터 캐나다 과세관청에서 한국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급자와는 달리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보지 않아 사학연금만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과세를 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과세적용의 불평등 취급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지급자에 비하여 사학연금 지급자에게 불리한 과세 조치로서 특수직역연금 제도 간의 과세형평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공적연금소득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자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예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캐나다에서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히 동일하게 과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군인연금은 2016년 3월 31일에 국내 국세청 예규를 변경하여 캐나다 과세대상소득에서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군인연금은 조세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보장법률에 따

2) 국세청 법령해석과-2423(2018. 9. 4.)호의 변경으로 예규를 변경하였음.

라 지급하는 급여로 보아 비과세가 된 것이다. 그 이후 공무원연금도 2016년 12월 29일에 예규변경을 통해 캐나다에서 수령하는 국내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2011년 9월 5일의 과거 예규에 따라 과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거주 사학연금 수급자는 연금소득 이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12개월분의 연금 중에서 약 두 달 가량의 월 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캐나다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었다.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비하여 소득세율이 높고 공제항목이 적어 추가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³⁾

이와 같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조치는 동일한 특수직역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하여 사학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해외에 불합리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학연금공단에서는 2018년도에 국내 국세청의 예규를 변경하여 캐나다에서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도록 예규 변경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4대 공적연금 간 동일한 과세취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예규 변경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수급자의 캐나다 연금소득과세에 대한 예규 변경 추진 사례를 살펴본 것으로서 최근 국제적 인력이동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부응하는 국제조세 측면을 다루었

3) 국내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은 해외에서도 수령이 가능한데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연금수급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지급한 연금을 수령 시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에 연금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때 해외에 신고하는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과 거주지국인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이때 전 세계 소득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에서 국내에서 기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동일한 과세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 공적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소득 과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공적 연금을 수령 시에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인 개선을 통해 해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역으로 해외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는 현행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캐나다의 조세협약에 관한 예규의 변경을 통해 연금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사례와 같이 향후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과세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캐나다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사회보장법률에 해외 연금 과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과 같이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연금세제의 국제적 조세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제적 연금세제의 개선사례를 살펴보았다는 측면과 둘째,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인력 이동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해외거주 공적연금 수령시의 과세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해외 거주 연금수령에 따른 비과세의 사례연구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해외 거주자의 사학연금 지급 시 과세의 개선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제Ⅳ장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과세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사례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요약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및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의 이해

1. 선행연구의 고찰

연금세제의 국제조세 측면을 다루었던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홍범교 외 2(2013)의 연구에서는 국제화에 부응하는 연금소득과세 측면을 살펴보았다.⁴⁾ 반면, 홍범교 외 2(2013)에서는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 제도를 살펴보았다.⁵⁾ 유호림(2011)과 손해연(2010)은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국제거래 측면을 살펴보았다.^{6), 7)} 더불어, 김선영(2013)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⁸⁾ 김영순(2015)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제12조인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범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⁹⁾ 그리

4) 홍범교 외 2인,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세법연구』 13-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

5) 홍범교 외 2인,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6) 유호림, “한·중 조세조약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359~413면.

7) 손해연, “조세조약 개정을 통한 한·중 국제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월드텍스 연구논집』 제3권 제2호, 월드텍스연구회, 2010.

8) 김선영,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절차”, 『Business, Finance & Law』 제5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66~79면.

9) 김영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

고 김재승(2014)의 연구에서는 조세조약 부재 시에 관한 과세방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¹⁰⁾ 김진웅(2009)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¹¹⁾ 윤지현(2007)은 조세조약에서 거주자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석하였고,¹²⁾ 이밖에 전영준(2015)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을 살펴보았다.¹³⁾ 그리고, 최근 이상엽 외4(2017)는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체결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¹⁴⁾ 정인영(2020)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에 관한 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국민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및 해외수급자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다른 국가와의 해외 수급권 확인 협조체계 강화되어야 하며, 해외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⁵⁾ 한편, 고윤성(2019)의 연구에서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¹⁶⁾ 반면, 김성숙(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보장협정의 현황 및 과제를 다루었다.¹⁷⁾ 백수현(2011)은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한 연구 :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405~434면.

- 10) 김재승,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방법의 개선”, 『법학논총』 제34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7~230면.
- 11) 김진웅,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조세연구』 제9-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29~70면.
- 12) 윤지현,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509~532면.
- 13) 전영준,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제29집 제1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367~399면.
- 14) 이상엽 외 4인,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조문별 조세조약 체결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7.
- 15) 정인영,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변동관리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301~324면.
- 16) 고윤성,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 연구』 제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9, 209~256면.

데, 해외파견 근로자의 외국 사회보장비용 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¹⁸⁾ 그리고, 정인영 외 1(2018)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수급권 변동에 대한 관리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금세제에 대한 국제조세 측면을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의 측면에서 소득과세의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의 측면을 살펴보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윤성(2019) 외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보장협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는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의 측면을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타국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과세 방안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의 이해

가. 조세조약별 연금소득 과세 분석

조세조약이란 보통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²⁰⁾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이나 조세협약

17) 김성숙, “사회보장협정의 현황 및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10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0, 271~287면.

18) 백수현,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 — 해외파견근로자의 외국 사회보장비용 면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59~89면.

19) 정인영 · 유현경,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8.

(tax convention) 또는 조세협정(tax agreement)과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및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부르고 있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계약국 간의 과세권 행사 시 발생 가능한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선진기술과 자본도입 등을 촉진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조세조약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조세, 소득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거주자, 고정사업장, 이중과세회피, 정보교환, 상호합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상호 간에 서로 다를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이자와 배당 및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이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그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세방법이나 절차 등은 조세조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연금 및 보험연금에 관한 조세조약은 대략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7조나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다. 반면, 정부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에서 언급하고 규정하고 있다.

20)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표 1> 조세조약별 연금소득 과세에 관한 조문 분석 현황

국가 (가나다 순)	연금 및 보험연금 조세조약 법조문(개정일)	정부 연금 조세조약 조문(개정일)
가봉	제17조 【연금 및 보험연금】 [2015. 12. 2.]	제18조 【정부용역】 [2015. 12. 2.]
그리스	제18조 【연금과 보험연금】 [1998. 7. 10.]	제19조 【정부용역】 [1998. 7. 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96. 1. 7.]	제19조 【정부용역】 [1996. 1. 7.]
네덜란드	제19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81. 4. 17.]	제20조 【정부기능】 [1981. 4. 17.]
네팔	제18조 【연금보험연금 및 사회보장지급금】 [2003. 5. 29.]	제19조 【정부용역】 [2003. 5. 29.]
노르웨이	제18조 【연금 및 사회보장지급금】 [1984. 3. 1.]	제19조 【정부기능】 [1984. 3. 1.]
뉴질랜드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83. 4. 22.]	제19조 【정부용역】 [1983. 4. 22.]
덴마크	제17조 【연금과 사회보장제도 지급금】 [1979. 1. 7.]	제18조 【정부용역】 [1979. 1. 7.]
독일	제18조 【연금보험연금 및 유사 지급금】 [2002. 10. 31.]	제19조 【정부용역】 [2002. 10. 31.]
라오스	제18조 【연금】 [2009. 12. 26.]	제19조 【정부용역】 [2006. 2. 9.]
라트비아	제18조 【연금】 [2009. 12. 26.]	제19조 【정부용역】 [2009. 12. 26.]
러시아	제18조 【연금】 [1995. 8. 24.]	제19조 【정부용역】 [1995. 8. 24.]
루마니아	제19조 【연금】 [1994. 10. 6.]	제20조 【정부용역】 [1994. 10. 6.]

국가 (가나다 순)	연금 및 보험연금 조세조약 법조문(개정일)	정부 연금 조세조약 조문(개정일)
룩셈부르크	제17조 【연금】 [1986. 12. 26.]	제18조 【정부용역】 [1986. 12. 26.]
리투아니아	제18조 【연금】 [2007. 7. 14.]	제19조 【정부용역】 [2007. 7. 14.]
∴ <중략> ∴	∴ <중략> ∴	∴ <중략> ∴
파나마	제17조 【연금】 [2012. 4. 1.]	제18조 【정부용역】 [2012. 4. 1.]
파키스탄	제18조 【연금】 [1987. 10. 20.]	제19조 【정부용역】 [1987. 10. 20.]
파푸아뉴기니	제18조 【연금】 [1998. 4. 21.]	제19조 【정부용역】 [1998. 4. 21.]
페루	제18조 【연금】 [2014. 3. 3.]	제19조 【정부용역】 [2014. 3. 3.]
포르투갈	제18조 【연금】 [1997. 12. 21.]	제19조 【정부용역】 [1997. 12. 21.]
폴란드	제18조 【연금】 [1992. 2. 21.]	제19조 【정부용역】 [1992. 2. 21.]
프랑스	제18조 【연금】 [1981. 1. 17.]	제19조 【정부용역】 [1981. 1. 17.]
피지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95. 2. 17.]	제19조 【정부용역】 [1995. 2. 17.]
핀란드	제18조 【연금】 [1981. 12. 23.]	제19조 【정부용역】 [1981. 12. 23.]
필리핀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86. 11. 9.]	제19조 【정부용역】 [1986. 11. 9.]

국가 (가나다 순)	연금 및 보험연금 조세조약 법조문(개정일)	정부 연금 조세조약 조문(개정일)
헝가리	제18조 【연금】 [1990. 4. 1.]	제19조 【정부용역】 [1990. 4. 1.]
호주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84. 1. 1.]	제19조 【정부용역】 [1984. 1. 1.]
홍콩	제17조 【연금】 [2016. 9. 27.]	제18조 【정부용역】 [2016. 9. 27.]

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참조함.

나. 사회보장협약을 통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통상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협정은 양 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서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체결은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위한 것이다. 즉, 연금 수급권의 취득과 급여의 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2020년 5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대한민국은 총 36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31개국과는 발효, 5개국과는 미발효 상태이다. 또한 10개 국가와는 보험료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고, 26개 국가와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을 체결하였다.

〈표 2〉 국민연금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발효국 현황

(기준일 : 2020. 5. 31. 기준)

구분		보험료 면제협정 (10개국)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협정 (26개국)
발효 (36개국)	북미(3)	—	캐나다('99. 5.), 미국('01. 4.), 퀘벡('17. 9.)
	중남미(3)	칠레('17. 2.)	브라질('15. 11.), 페루('19. 1.)
	유럽(23)	영국('00. 8.), 네덜란드('03. 10.), 이탈리아('05. 4.), 스위스('15. 6.)	독일('03. 1.), 헝가리('07. 3.), 프랑스('07. 6.), 체코('08. 11.), 아일랜드('09. 1.), 벨기에('09. 7.), 폴란드·슬로바키아·불가리아 ('10. 3.), 루마니아('10. 7.), 오스트리아('10. 10.), 덴마크('11. 9.), 스페인('13. 4.), 터키·스웨덴 ('15. 6.), 핀란드('17. 2.), 룩셈부르크('19. 9.), 슬로베니아 ('19. 10.), 크로아티아('19. 11.)
	중동(1)	이란('78. 6.)	—
	아시아(5)	중국('13. 1.), 일본('05. 4.), 우즈베키스탄('06. 5.), 몽골('07. 3.)	인도('11. 11.)
	오세아니아(1)	—	호주('08. 10.)

Ⅲ. 해외(국내) 거주자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점

1. 해외거주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 현황

통상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을 퇴직 시점에 선택할 수가 있다.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후에는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금을 수령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해외로 출국 시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액을 기준으로 4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더 이상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연금제도를 청산할 수도 있다.²¹⁾ 그러나, 최근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크며 대다수가 이민을 가더라도 일시금 보다는 연금을 선택하여 연금을 수령하기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현재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90,989명이며, 퇴직연금은 80,597명이며, 유족연금은 8,942명이며, 장애연금은 143명이고, 연계연금은 1,307명이 수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 선택자는 전체 퇴직자를 기준으로 90.9%가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²²⁾

반면, 사학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도별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²³⁾ 해외 거주자는 연금을

21) 공무원연금법 제44조.

22) 2020년 사학연금 통계연보를 참조함.

23) 본 숫자는 해외에 거주한다고 사학연금공단에 신고한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현지 통화로 해외 계좌로 수령하기도 하는데 현지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자 현황은 202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812명임을 알 수 있다. 사학연금의 해외수급자 수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는 총 457명(해외거주 외국인 및 내국인 수급자 453명과 국내거주 외국인 수급자 4명)에서 2020년 총 812명(해외거주 수급자 767명과 국내거주 외국인 수급자 4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²⁴⁾ 2011~2017년의 전체 해외수급자 중에서 해외거주 수급자 비율이 99%대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98%대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94.5%까지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해외수급자 중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급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사학연금 전체 연금수급자는 90,989명이며 해외수급자 비율은 0.89%이다.²⁵⁾

<표 3> 특수지역연금 중 사학연금의 해외 연금수급자 수 추이²⁶⁾

(단위 : 명, %)

연도	전체 외국인 수급자(A)	국내거주 외국인수급자(B)	해외거주 수급자(C)	C/A	B/A
2011년	457	4	453	99.1	0.9
2012년	487	4	483	99.1	0.9
2013년	525	4	521	99.2	0.8
2014년	557	4	553	99.3	0.7
2015년	591	4	587	99.3	0.7
2016년	625	4	621	99.3	0.7
2017년	669	6	663	99.1	0.9

해외거주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24) 정인영, “사학연금의 해외수급자 수급권 보장 방안 연구”, 『사학연금 연구』 제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 93면을 참조함.

25)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연금수급자 5,306천명 대비 해외수급자 11,598명의 비율인 0.21%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임.

26) 정인영, 위의 논문, 93~94면을 참조함.

연도	전체 외국인 수급자(A)	국내거주 외국인수급자(B)	해외거주 수급자(C)	C/A	B/A
2018년	727	9	718	98.7	1.3
2019년	771	14	757	98.1	1.9
2020년	812	45	767	94.5	5.5

주 :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누적 현황.

자료 : 사학연금공단(2020) 내부자료.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연금의 외국인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에 1,481여명이었던 외국인 가입자 수는 2018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11,42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외국인 가입자 수 비율도 2010년에 0.55%에서 2020년에 3.4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 수의 증가는 앞서 살펴본 해외수급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대부분은 대학교와 전문대 교직원이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초등·중등·고등 교직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사학연금의 외국인 가입자 추이

(단위 : 명, %)

연도	사학연금 가입자(A)	외국인 가입자				B/A
		대학교·전문대	유치원	초·중·고	계(B)	
2010년	267,481	1,477	1	3	1,481	0.55
2011년	272,899	3,078	5	5	3,088	1.13
2012년	271,415	4,588	12	5	4,605	1.70
2013년	276,959	5,844	15	6	5,865	2.12
2014년	280,721	7,075	21	6	7,102	2.53
2015년	282,467	8,062	30	6	8,098	2.86
2016년	313,156	8,885	41	7	8,933	2.85

연도	사학연금 가입자(A)	외국인 가입자				B/A
		대학교·전문대	유치원	초·중·고	계(B)	
2017년	317,602	9,610	48	8	9,666	3.04
2018년	320,326	10,292	57	9	10,358	3.23
2019년	323,697	10,815	62	10	10,887	3.36
2020년	327,864	11,346	68	13	11,427	3.49

주 :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누적 현황.

자료 : 사학연금공단(2020) 내부자료.

아래 <표 5>는 거주국별, 급여종별 해외수급자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 거주자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급여종별로는 퇴직급여(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가 전체 해외수급자의 88%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퇴직유족급여의 비중이 크다.

<표 5> 거주국별, 급여종별 해외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국가	퇴직급여 종류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재해보상급여 (직무상유족연금)	계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한국	167	28	24	1	220
미국	262	43	47	3	355
캐나다	84	8	6	—	98
호주	13	1	—	—	14
뉴질랜드	28	8	2	—	38
일본	6	—	1	—	7
독일	4	—	1	—	5
프랑스	3	—	—	—	3
태국	2	1	—	—	3

국가	퇴직급여 종류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재해보상급여 (직무상유족연금)	계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기타	49	4	15	1	69
계	618	93	96	5	812

주 : 2020년 12월말 기준 누적 현황.

자료 : 사학연금공단(2020) 내부자료.

2. 해외 거주자 공적연금 수령 시 법 해석 및 문제점 분석

가. 연금에 관한 조세조약 등의 과세관청 법 해석

연금의 조세조약이나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예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 주재원에 대하여 본국 가입 연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²⁷⁾ 현재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의하여 본국에서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²⁸⁾

과세관청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

27)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173(2011. 3. 28.).

28) 서이46013-10468, 2003. 3. 10.

어, 일본국 기업인 A사는 A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내국법인 B사에 일본국적의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해당 주재원의 급여를 B사가 부담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해당 주재원이 일본에서 가입한 국민연금(후생연금) 사용자부담분에 대하여 A사가 일본국에서 납부하고 동 금액을 B사에 청구한다고 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외국인 주재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6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단기파견자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의 후생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자료²⁹⁾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³⁰⁾ 또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국내 자회사에 단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³¹⁾ 또한, 국내자회사에 단기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에서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9) 국제조세 해석편람 제52쪽의 20-1-2 [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

30) 국일 46017-320(1996. 5. 29.); 서이46013-10468, 2003. 3. 10.

31) 서면 법규과-662, 2014. 6. 26.

나. 공적연금 수급자에 관한 과세 예규 해석

현재 사회보장협약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체결되어 있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중국과만 체결되어 있다.³²⁾ 또한, 조세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이에 해당된다. 과거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 시에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아 해외국인 캐나다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³³⁾ 우선, 군인

32)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약 체결 참고, 고윤성(2019) 『사학연금 연구』를 참조할 것.

33)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지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

연금에 대한 예규는 다음과 같다.

가령, 2006년 이후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이며,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부터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제목] 군인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 2019. 8. 27.)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또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예규는 다음과 같다.

[제목]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 12. 29.)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예규는 다음과 같다.³⁴⁾

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34) 국민연금소득의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적용방법,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24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2021. 4. 22.

[제목]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조, 서면-2020-국제세원-40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2020. 9. 23.)

[요지] 「국민연금법」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 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³⁵⁾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예규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사학연금을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보지 않았지만, 관련 해석이 바뀌어 현재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인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된다. 사학연금 수령자 캐나다 이민을 할 경우에는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사학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이민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위 연금소득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된다. 예규 변경 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35) 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 9. 5.(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반면, 예규 변경 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목]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국조,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 9. 7.)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해외(캐나다)에서 수령 시 거주지국인 캐나다 관세관청은 한국에서 받는 연금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수급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연금을 수령하여도 한국과 거주지국 간에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여 거주지국인 해외에서 한국의 연금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6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은 모두 캐나다 과세관청에 과세대상으로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런 가운데 2016년에 들어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예규를 받았다.³⁶⁾

그러나, 사학연금은 기존 예규에 따라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

36)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의 예규를 통해 비과세대상이 되었음.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2016. 12. 29.). 그리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한바 비과세대상이 되었음.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2016. 3. 31.).

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³⁷⁾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캐나다 거주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타 연금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캐나다가 상호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거 사회보장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예규 변경을 추진하였다. 다른 연금수급자와는 달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는 캐나다에서 과세가 되고 있어 다소 불리한 입장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특성을 살펴볼 때 동일한 세제취급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제도개선을 위하여 타당성을 마련하고 예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이 타 공적연금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다. 공적연금 간에 적용되는 과세 차이로 인한 문제점 발생

(1) 공적연금 간 과세적용상 차이에 따른 문제점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4대 공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연금은 적립 기금을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점으로 볼 때 제도 간 공통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 시 소득세의 과세적용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18년 9월 6일 예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사학연금을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수령할 경우에는 캐나다 과세관청에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해외에서 수령 시에는 전 세계 소득에서 공적연금 소득이 제외되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만 거주지국의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적연금 간 과세적용의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

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2011. 9. 5.).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연금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성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학연금은 동일한 특수직역의 연금제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 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적용의 차이를 발생케 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특수직역연금 간의 소득세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조세조약에서는 양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서는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여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수직역연금은 불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연금을 지급 시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해외 거주지에는 국내에서 지급한 연금과 해외에서 발생한 연금 및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 세계 소득으로 해외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한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학연금에 대하여 해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사학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때 캐나다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보다 클 경우 캐나다에서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 반면, 캐나다에서 납부할 세금이 오히려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보다 적다면 이때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³⁸⁾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보고를

38) 가령,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1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한국에서 이미 5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추가로 50만원만 캐나다 과세관청에 납부하면 됨. 그러나, 반대로 1백 50만원을 한국에서 납부하였다면 추가금액 50만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음.

완료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연금소득과 별도로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전 세계 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높은 상황으로 인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세율과 공제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추가로 캐나다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는 한국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이는 사학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공적연금 간 과세적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수급자에게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과세조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간에 적용되는 과세형평이 상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 있었다.³⁹⁾ 즉,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해외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의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반면,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사학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비록 한국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캐나다 국가의 소득으로 보아 군인연금

39) 한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상에서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규로는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2016. 12. 29.)의 예규가 있음.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예규는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2016. 3. 31.)의 예규가 있음.

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2) 특수직역연금 간 과세적용의 불평등 초래 : 사학연금이 불리한 상황

국민연금 수급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기 체결된 사회보장협약을 통해 캐나다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비과세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에 속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할 경우에는 해외 체결국과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캐나다 국가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부과하여 왔었다. 그러던 중에 2016년에 국세청 예규를 비과세로 변경 신청하여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2017년도부터는 캐나다 국가에서 한국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되었다. 그러나 유독 사학연금만은 기존 예규에 따라 캐나다에서 사학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캐나다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에 사학연금공단과 캐나다 공인회계사의 공동 협조하에 예규 변경을 추진하게 되어 2018년 사학연금 수령 분부터는 캐나다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다.

국제이동이 잦아지면서 국제이동 인력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공적연금 소득 이외에 추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소득과 캐나다 소득을 합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캐나다 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합산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연금소득까지 합쳐 신고하면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세율이 높고 공제항목이 적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연금을 지

40) 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예규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2011. 9. 5.)의 예규가 있으며, 사학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급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추산해보면 매월 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월액의 두 달 내지 석 달에 상응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⁴¹⁾

이와 같은 해외거주 사학연금 수령 시 캐나다 국에 과세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 비해 사학연금 수급자가 세제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⁴²⁾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캐나다 국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학연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의 두세 달에 버금가는 금액으로서 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비교해볼 때 사학연금 수급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특수직역연금 간에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과세형 평성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사례로 간단히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사학연금 수급자가 매월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3백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만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자. 재직기간은 2002년부터 240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자. 1년간 전체 연금 수령액은 36,00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85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2,750만원이 산출된다. 이때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 시 본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액 150만원만 공제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2,600만원이 되며, 납부할 세금은 282만원으로 산정된다.⁴³⁾ 반면, 캐나다에서 수령한

41) 각각 연금수급자가 해외에서 추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한국에서 지급한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여야 함. 종합소득신고 시 해외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세금부담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음.

42)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소득 발생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캐나다 소득 세율이 한국 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보다 사학연금 수령자는 연금소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임.

43)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4,600만원에 대하여는 15%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다고 가정할 경우에 단지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캐나다 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358만원이 산정된다.⁴⁴⁾

<표 6>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내 거주 세 부담과 해외 거주 수령 시 세 부담 비교

해외 과세 구분	캐나다 과세 금액	국내 과세 구분	국내 과세금액
캐나다 과세대상 급여액	\$36,000	한국 수령 총 급여액	3,600만원
소득공제액	\$4,000	연금소득공제액	850만원
세법상 과세대상소득	\$32,000	세법상 과세대상소득	2,750만원
세율	20%	공제항목	150만원
산출세액	\$6,400	과세표준	2,600만원
환율	1,000원/\$	적용 세율	15%
원화 환산 세액	640만원	산출세액	282만원

주 : 사학연금 내부자료(2020)를 참조함.

× 15% - 108만원)으로 총 납부할 세금은 282만원이 됨.

44) 환율로 계산하면 \$36,000라고 가정 함.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면, 기본공제와 노인공제 합이 20%만 공제함. 즉, 기본공제 \$12,000와 노인공제 \$8,000 합이 20%만 공제됨. 그러므로 $(\$12,000 + \$8,000) \times 20\% = \$4,000$ 가 공제됨. 세법상 과세대상은 \$32,000가 되며,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6,400가 됨. 원화로 환산 시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640만원임. 한국에 납부한 282만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358만원임.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노인공제액은 1/2로 감소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더욱 증가하게 됨.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358만원이 되므로 이는 1개월분의 급여인 300만원보다 더욱 큰 금액으로 사학연금 수령자의 과세금액은 커지게 되는 실정임.

3. 국내 거주자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점

현재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를 하고 있다. 즉, 유족연금 등이 비과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이 비과세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이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의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해외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가령,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⁴⁵⁾ 예를 들어, A는 국내 거주자로서 독일에서 근무하던 ○○사로부터 매달 연금 480유로를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국외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소득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를 하여야 할지 의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과세 여부가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외국에서 수령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들은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45) 국외연금소득의 과세 여부(소득, 서면-2015-소득-1475, 2015. 8. 11.).

IV. 해외(국내) 거주 연금 수령 시 이중과세 방지 방안

1. 특수직역연금 간의 과세 예규 해석 상이에 따른 문제점 극복

기존에 캐나다 과세관청에 소득세가 부과되던 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내 예규를 변경하는 노력을 통하여 2018년 9월 4일 비과세 예규를 받았다. 이를 통해 예규변경으로 특수직역연금 간 과세 형평성이 달성되고 해외연금수급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특수직역연금 간 동일한 과세 적용이 유도되는 개선이 있었다. 이것은 동일한 예규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이다. 여러 차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와 공동 협조를 통해 예규변경을 추진하였으며, 국제청의 방문을 통해 예규 변경 의견서를 제시하여 예규 변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수직역연금 간의 과세 예규 해석이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의 수급자는 해외에 거주 시 해외 거주지국의 국제청에 한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이르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제청으로 법 해석에 관한 신규 예규를 받아 해외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지급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는 캐나다 거주지국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유독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과는 달리 여전히 캐나다 과세관청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한국과 캐나

다가 기 체결한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캐나다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왔던 것이다.

2011년도에 이미 사학연금에 대하여만 캐나다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법령의 해석이 있었던 것이다. 예규에 의하면 사학연금은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⁴⁶⁾ 사학연금에 대한 예규가 있는 후 6년이 경과된 후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은 각각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비로소 캐나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것이다.⁴⁷⁾ 그 당시 받은 예규에 의하면 캐나다 거주자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기 체결한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보아 캐나다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⁴⁸⁾

그러나 사학연금은 여전히 캐나다 거주지국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⁴⁹⁾ 캐나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수령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며,⁵⁰⁾ 비거주자가 받고 있는 사학연금은 조세조약상에서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캐나다에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학연금이 한국과 캐나다 간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과 캐나다가 기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 해

4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2011. 9. 5.).

47) 군인연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로는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2016. 3. 31.)이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2016. 12. 29.)임.

48)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4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 9. 5.(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0)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석을 받아 예규변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 해외 거주 사학연금 수령 시 비과세 효과 분석

가. 예규 변경 추진과정 및 기대 효과

사학연금은 2011년 9월 5일의 과거 예규에 의하여 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이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12개월분의 연금 중에서 약 두 달 가량의 월 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캐나다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소득세율이 높고 공제항목이 적어 추가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국세청의 예규를 변경하여 캐나다에서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였다. 4대 공적연금 간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규 변경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캐나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세무신고 업무 반영하여 해외 사학연금 공단에서는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 서면질의 및 공단 의견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하였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사학연금연구 결과의 일환으로 국세청 예규 변경을 통해 사학연금의 해외 연금 수령 시 비과세처리 하였으며, 이러한 처리 결과를 캐나다 BC주 한인회계사협회에 예규변경의 사실을 통보하게 되었다.⁵¹⁾

이와 같은 예규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학연금 공단의 해외 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해외 연금수급자의 과세 예규 변경 추진 완료하였다. 이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동일한 과세 형평성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과세사례의 예규 변경을 통하

51) 국세청 법령해석과-2423(2018. 9. 4.).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 수령은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여 해외 사학연금 수급자 76명에 대하여 세 부담 감소 효과로 인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간 예상 세금 절감액은 통상 수령하는 월 연금액의 3배 이상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약 4억 6천만원의 금액이 절감된다. 이는 76명에 대한 월 연금액이 전체 154,067,790원이며 여기에 3개월분을 곱하면 462,203,370원이 산출된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캐나다 이외의 모든 나라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과세방지 사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대한 정부 정책적 요구에 따라 공단의 설립목적인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연구 과제 발굴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거주 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연구 및 예규 변경 추진으로 수급자의 편익제공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구체적인 기대효과 분석

이러한 예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해외 사학연금 수급자 76명에 대하여 해외 사학연금 수급자 세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해외 사학연금 수급자의 과세자료는 개인별 공제항목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에 따라 월 연금액의 두~세배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기준으로는 308,135,580원~462,203,37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⁵²⁾ 이 금액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단기체류자 뿐만 아니라 임시 체류자 등도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사학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해당금액은 더욱 큰 금액으로 증가될 것으로 본다.

52) 연간 세금 절감액은 월 연금액의 3배 정도로 추정됨. 154,067,790원 × 3개월 = 462,203,370원.

3. 캐나다 과세사례를 통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가.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 검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제이동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외에서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의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가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해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한국에서 지급한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할 경우 해외의 소득세율이 국내의 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국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우리나라와 거주지국 간에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여 캐나다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캐나다 국에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해외 거주지 체약국과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하여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공적연금 간에 동일한 과세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며,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게 불공평한 세제 취급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지급한 사학연금이 캐나다 거주지국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이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가입자는 고용주가 국가이므로 국가에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사학

연금만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주는 사립학교이므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수지역 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는 각 연금법 등에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향후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할 때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근거가 있었다면 실제로 특수지역연금 중에 하나인 사학연금의 경우에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로 해석하여 비과세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외국인의 국내 거주 시 해외 수령 연금에 대한 과세 검토

현재 해외에서 국내 연금을 수령 시 거주지국의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본 사례와는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전 세계 소득으로 합산하여 국내에서도 과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해외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마다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보아야 하며, 각국마다 체결된 조세조약의 사회보장지급금에 대한 조항뿐만 아니라 민간 퇴직연금과 보험연금에 관한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금공단에서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조직의 마련이 필요하며 과세관청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국제조세 전문 인력의

추가 보충이 필요하다.⁵³⁾ 위의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양국 간의 조세 조약의 검토를 통해 연금소득 과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사례에서는 캐나다 거주국의 사례만을 살펴보았는데 캐나다 국가 이외의 과세문제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역으로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도 해외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한국·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조세협약 개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

(1) 영국의 사례 검토

영국에서도 연금소득을 포함한 해외소득은 비국적자를 대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인식하는 세법이 적용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해외소득은 본국에서 납세된 경우도 신고 및 납세의무를 갖게 된다. 과세대상인 거주자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 제18조(연금)에는 제19조(정부용역)에 의해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이외에 보험연금과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때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있다.⁵⁴⁾

(2) 호주의 사례 검토

일반적으로는 해외연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본인이 납부한 부담부분 UPP(Undeducted Purchase Price)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이태리 등은 처리방법이 다음의 호주 국제

53) 김성숙, 앞의 논문, 271~287면.

54)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연금】 [1996. 12. 29.]과 제19조 【정부용역】 [1996. 12. 29.].

청 웹사이트에 언급되어 있다.⁵⁵⁾ 호주의 경우 세법상 호주거주자인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income)은 과세신고서(tax return)에 포함되며, 종류에 따라 면제 혹은 세액공제(credit)를 받음으로써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⁵⁶⁾ 호주 조세조약 제18조에는 연금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⁵⁷⁾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연금 또는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로서의 적절하고 충분한 고려에 대한 반대지불을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소정시기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소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3) 독일의 사례 검토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18조에는 연금, 보험연금 및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과 유사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은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또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법정 사회보험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금은, 사안에 따라,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위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또는 군복무나 이를 대체하는 민간역무의 결과로 받은 손해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한 또는 확정 가능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횟수

55) <https://www.ato.gov.au/Individuals/myTax/2018/In-detail/Foreign-pensions-and-annuities/>(검색일 : 2022. 7. 27.).

56)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8/Supplementary-tax-return/Income-questions-13-24/>(검색일 : 2022. 7. 27.).

57) 「한국·호주 조세조약」 제18조.

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⁵⁸⁾

(4) 중국의 사례 검토

중국 조세조약 제18조에는 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상의 공공복지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⁵⁹⁾

(5) 미국의 사례 검토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⁶⁰⁾ 또한, 제23조에는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별거수당과 보험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본 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라 함은, (a)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 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 지급금을 의미한다. 본 조에서 사용되는 “보험연금”이라 함은 적당하고 충분한 대가의 대상으로 지급의무에 따라 생존기간 또는 특정 연한 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

58)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18조.

59) 「한국·중국 조세조약」 제18조.

60) 소득46011-566, 1999. 12. 31.

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V. 결 론

글로벌화 시대로 인하여 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 거주 및 국제적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4대 공적연금에 속하는 점은 타 공적연금과 동일하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 시에는 국민·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타국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예규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에 지급하는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은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비과세가 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16년에 예규를 개정하여 비과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사학연금 수급자는 예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사학연금 수급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왔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합산 과세하는 국제조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국제적 인력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인력의 국제적 이동이 잦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는 국제 인력 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합산소득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 관점에서의 소득과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외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으로 해외 거주지국에 세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을 해외에서 수령할 경우에는 국내 사학연금공단에서 연금급여를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한 후에 세후 금액으로 해외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연금수급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비롯한 국내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그 후 해외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해외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에서의 과세는 국내에서 보다도 더욱 폭넓은 과세대상으로 국내외 전체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의 한계세율의 증가로 인하여 세 부담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비단, 국내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국내세율보다 해외의 적용세율이 높아 해외 거주자는 많은 세금 부담을 하여 왔었다.

향후 연금문제는 국제적인 조세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캐나다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미 계통인 영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도 캐나다의 사례와 동일한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제적 이동 인력에 따른 연금소득의 캐나다 과세사례가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국제적 연금소득과세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에 비하여 특수직역연금 수령자가 해외 거주 시 불리한 세제취급을 받지 않도록 각 국가마다 기 체결한 조세조약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세제 취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조치는 비단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에 대하여 각국마다 체결한 조세협약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민자에게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거주지국에서의 불필요한 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과거에 살펴보지 못했던 연금세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간과해 왔었던 국제적 연금세제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화에 따른 인력 이동이 잦은 현 상황 가운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연금세제의 개선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 거주 시 캐나다 과세관청에서의 비과세 조치는 국제적 인구의 인력 이동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 간 국제 인력 이동의 증가와 이민자 등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통한 인력 이동은 국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의 대부분은 소득과세의 근간으로 손꼽히는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지급지국 과세원칙이 양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조세협약이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금 세제를 위한 조세조약 체결·개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이동 인력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고윤성,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 연구』 제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9.
- 국세청,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2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6.
- 김선영,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절차”, 『Business, Finance & Law』 제5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 김성숙, “사회보장협정의 현황 및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10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0.
- 김영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김재승,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방법의 개선”, 『법학논총』 제34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김진웅,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조세연구』 제9-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 백수현,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 해외과거근로자의 외국 사회보장비용 면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 손해연, “조세조약 개정을 통한 한·중 국제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월드텍스연구논집』 제3권 제2호, 월드텍스연구회, 2010.
- 유호림, “한·중 조세조약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 윤지현,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 이상엽·박수진·유현영·이형민·조승수,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조문별 조세조약 체결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7.
- 전영준,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제29집 제1

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정인영,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변동관리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_____, “사학연금의 해외수급자 수급권 보장 방안 연구”, 『사학연금 연구』 제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

정인영 · 유현경,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8.

최옥금, 『국민연금의 일시금제도 개선방안 및 운영방향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2012.

홍범교 · 박수진 · 정경화,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세법연구』 13-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

홍범교 · 송은주 · 박수진,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한국개발연구원,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서명”,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협정 체결의 대응방향”, 『정책보고서』 95-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Prevent Double Taxation on Pension Income
on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Living in Overseas**

Su Sung Kim*

In the 21st century, more than 10% of Korea's population lives and lives abroad. With the recent advent of the globalization era,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manpower is more frequent. As a result, taxation on international mobility personnel has become important. Moreover, the importance of tax treaties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has grown.

This study attempted to devise a means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by examining tax treaties to prevent this, as there is room for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when receiving public pensions while residing in various countries. Currently, if the public pe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received in an overseas country, it will be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by combining other income generat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domestic pension income, resulting in an additional tax burden. These problems are solved through tax treaties.

In view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rovement cases and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pension income taxation, citing cases of private pension recipients receiving pensions in Canada among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ame problem from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other than Canada through such improvement cases. Conversely, when receiving overseas pensions while residing in Korea, I would like to further examine the problem of not being taxed under the current tax law system.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eeking a direction to improve rational pension income tax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mobility personnel. The policy proposal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great benefits not only to the tax authorities but also to overseas pensioners.

▶ **Key Words** : canadian pension receipt, overseas pension receipt,
global income, social security agreement, tax treaty

* Ph.D. of Taxation, Teachers' Pension

